

국기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되며 그 명칭은 '국기원'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UKKIWON' (World Taekwondo Headquarters)이라 한다.<개정 2019.5.13.>

제2조(목적) 국기원은 대한민국 문화 유산인 태권도 정신과 기술을 계승·발전시켜 태권도 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며, 범세계적으로 태권도의 전파·보급을 통해 인류평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3.>

제3조(사무소 등) 국기원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지역에 지원, 지부, 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9.5.13.>

제4조(사업) 국기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태권도 기술 및 이론 등의 연구 개발<개정 2019.5.13.>
2.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3. 태권도 지도자 연수·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 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4.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5. 태권도 관련 해외보급과 국제교류 사업
6. 태권도 관련 대회 및 행사 개최 사업
7. 태권도 홍보 및 문화진흥에 관한 사업
8. 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9. 태권도 관련 단체 지원 사업
10. 태권도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사업<신설 2019.5.13.>
11. 제1호부터 제10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및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개정 2019.5.13.>

제5조(수익사업) ① 국기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조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5.13.>

제6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국기원은 제4조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9.5.13.>

② 국기원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 지역, 국적, 종교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9.5.13.>

제7조(협력·지원 사업 등) 국기원은 태권도 보급 및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해 세계태권도 연맹을 지원한다.<본조 신설 2019.5.13.>

제2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 국기원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원 장 : 1인

3. 이 사 : 20인 이상 30인 이내(이사장, 원장,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개정 2019.5.13.>

4. 감 사 : 2 인

5. 상근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국기원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이사를 둔다. 다만, 2개월 내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는 재적이사 정족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5.13.>

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국장<개정 2019.5.13.>

2.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의 해당 조직 상근임원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하는 각 1인<개정 2019.5.13.>

③ 제2항 제2호의 단체장이 국기원의 당연직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 국기원 이사장은 국기원의 상근임원 1인을 해당단체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신설 2019.5.13.>

④ 제1항의 임원 외 명예이사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이사장,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5.13.>

⑤ 명예이사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신설 2019.5.13.>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원장은 국기원 태권도 9단 또는 고단자로서, 원장선출위원회에서 1인을 선출하여 이사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개정 2019.5.13.>

③ 원장은 당연 이사가 된다.<신설 2019.5.13.>

④ 원장선출위원회는 70인 이상으로 [별표 2]와 같이 구성하고 국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이상의 공고로 원장 후보자를 공모해야 한다. 원장 후보로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 태권도 4단 이상 소지자의 50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5.13.>

⑤ 원장 선출을 위해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원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19.5.13.>

⑥ 이사장은 원장 선출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또는 별도의 선거관리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5.13.>

⑦ 원장선출위원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하여 선출한다.<신설 2019.5.13.>

⑧ 원장선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신설 2019.5.13.>

⑨ 국기원 이사회는 태권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여성, 태권도학도가 있는 대학 등 학교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자, 장애인 태권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국내외 태권도인, 태권도 산업계 종사자, 법률가, 언론인, 회계사, 국제체육기구 위원 등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 되도록 한다.<개정 2019.5.13.>

⑩ 제9항의 국기원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9.5.13.>

⑪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 후보 중에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신설 2019.5.13.>

⑫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 후보 중에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신설 2019.5.13.>

⑬ 제11항 및 제12항에 의한 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 선임 시 마다 다음 각 호의 10인의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9.5.13.>

1.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기자연맹 추천 각 1인

2. 국기원 승품.단 심사 추천(3년 평균) 공헌도가 높은 국내, 해외 사범 각 1인

⑭ 이사 후보 공모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5.13.>

1. 이사추천위원회는 국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이상의 공고로 이사 후보를 공모해야 한다.

2. 이사 후보로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 경력증명서, 기타 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이사추천위원회는 제9항과 제10항을 고려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후보자 2배수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다만, 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후보로 추천할 수 없다.

4. 이사 후보 응모일 당시 제11조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5.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이사추천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⑮ 이사 또는 원외인사 중에서 부원장 3인(행정부원장, 연수원장, 국제부원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신설 2019.5.13.>

⑯ 원장, 부원장 2인(행정부원장, 연수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국제 부원장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9.5.13.>

⑰ 이사의 연임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다만, 연임이 부결된 이사는 당해 이사회 의결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신설 2019.5.13.>

⑱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신설 2019.5.13.>

⑲ 임원의 임기만료 및 보선의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후보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개월을 경과할 수 있으나,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해야 한다.<신설 2019.5.13.>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임원,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국기원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의견 요구

4. 이사회에의 출석 및 발언

5.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즉시 보고<개정 2019.5.13.>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 소집 요구

⑤ 제4항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5.13.>

⑥ 국기원 임원은 국기원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⑦ 임원이 소속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⑧ 임원이 소속단체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임원이 국기원이 아닌 기타 소속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국기원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된다.<개정 2019.5.13.>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미성년자

② 국기원의 임원이 제 1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 국기원 또는 기타 소속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19.5.13.>
 2.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 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 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3.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 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 또는 제명된 사람
 4.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 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신설 2019.5.13.>
 6.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태권도협회 등에서 승품·승단 심사와 관련 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해임된 사람<신설 2019.5.13.>
- ④ 임원으로 선출 된 자 또는 선출 예정인 자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혹은 이사장이)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의한 최초의 이사 선임 이후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최초 선임된 이사의 임기와 같이 한다.<개정 2019.5.13.>

② 당연직 이사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1년 이상일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한다.<개정 2019.5.13.>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5.13.>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선된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5.13.>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국기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법인의 이사회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임원의 취임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5. 고의·태만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6. 신체 정신질환 또는 기타사유로 1년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법인이 인정하였을 경우
7. 기타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이사장·원장 등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개정 2019.5.13.>

② 원장 궐위 시에는 행정부원장, 연수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은 2개월 이내에 원장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행정부원장, 연수원장이 이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개정 2019.5.13.>

③ 이사장, 원장, 행정부원장, 연수원장 모두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순으로 이사장, 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 원장 후임자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신설 2019.5.13.>

④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다. <신설 2019.5.13.>

제16조(임원의 사임과 해임) ① 임원의 사임은 사직서를 사무부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신설 2019.5.13.>

② 당연직 이사는 해당기관 및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등의 경우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5.13.>

제17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개정 2019.5.13.>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회의 수당,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5.13.>

③ 임원이 국기원과 관련된 별도의 직책을 겸직할 경우 정액의 활동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5.13.>

④ 임원의 수당, 여비 기타 실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8조(이사회 구성) ① 국기원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9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원장이 의장이 되며, 원장이 궐위되었거나 불참 시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2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기본재산의 편입, 변경,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운영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제9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요구한 사항
10. 사업에 부대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1. 관련 규정,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2. 기타 국기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해당 조직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시작 전까지 이사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5.13.>

제23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전자메일 또는 서면 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권 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이사장, 원장 포함)의 선임·해임 의결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5조(회의록) ①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정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존한다.

② 회의록은 차기회의에서 보고하며 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을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등의 절차에 따르며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운영이사회) ① 국기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이사는 이사 중 11인 이내로 원장과 협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개정 2019.5.13.>

③ 운영이사회 의장은 원장으로 한다.

④ 운영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 ① 국기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법인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국기원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⑤ 기본재산의 증감 및 처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재산목록의 비치) ① 국기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9조(사업자금의 조성) 국기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체육관련 기금 보조금, 기본재산의 과실, 승품·단 심사 등록비 및 기타 사업을 통한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30조(회계연도) ① 국기원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사업계획과 예산편성) ① 국기원은 사업연도의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정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계획 중 수혜자에게 그 대가를 부담시키는 승품·단 심사비용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국기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국기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와 결산서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결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기원은 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2. 수입·지출결산서

④ 국기원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 자료를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신설 2019.5.13.>

제33조(잉여금의 처리) 매 연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 및 행정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감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5.13.>

제5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부서) 국기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설치하고, 사무부서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운영) 사무부서 운영에 필요한 직제, 복무, 인사, 회계 등에 관한 제반 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세계태권도연수원 <개정 2019.5.13.>

제37조(설치근거) 국기원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세계태권도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영문으로는 World Taekwondo Academy(약칭 WTA)로 표시한다.<개정 2019.5.13.>

제38조(목적) 연수원은 각종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우수한 태권도지도자를 양성하여 태권도지도자의 질적 향상과 태권도 보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사업) 연수원은 제38조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5.13.>

1. 태권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사업
2.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연수사업
3. 태권도 관련 단체 위탁 연수사업
4. 국내외 태권도 보급 및 교육사업
5.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온라인 연수사업
6. 태권도 기술연구 및 교본, 지도자교재편찬 사업
7. 기타 태권도 지도자 양성에 필요한 사업

제40조(재정) 연수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보조금, 국기원 지원금, 연수 관련 수익자 부담금, 기타 출연기금으로 한다.

제7장 태권도연구소 <개정 2019.5.13.>

제41조(설치근거) 국기원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태권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원장 직속기구로 한다.<개정 2019.5.13.>

제42조(목적) 연구소는 태권도의 기술과 이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세계의 태권도 본부로서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사업) ④ 연구소는 제42조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5.13.>

1. 태권도역사, 철학에 관한 연구
2. 태권도지도 및 교육에 관한 연구
3. 태권도 기술정립 및 신 기술개발 연구
4. 태권도 포럼, 토론회 등의 학술사업
5. 국내외 태권도관련 학문실태 분석 및 문헌자료 수집

6. 태권도 지도자 및 수련자의 인성, 정신 교육자료 연구
 7. 태권도 교본 및 교육자료 개발연구
 8. 국내외 태권도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연구
 9. 태권도문화 및 관광 사업에 대한 연구
 10. 태권도 계량적 평가 및 분석에 대한 연구
- ② 기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자매연구기관으로 둘 수 있다.

제44조(재정) 연구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보조금, 국기원 지원금, 연구소 수익금, 기타 출연기금으로 한다.

제8장 태권도 시범단

제45조(설치근거)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태권도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6조(목적) 시범단 운영을 통해 국위선양 및 태권도 홍보와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사업) 시범단은 제46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5.13.>

1. 태권도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공연사업
2. 시범단 국내, 해외 파견사업
3. 시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기타 시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48조(재정) 시범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보조금, 국기원 지원금, 공연 관련 수익, 후원금, 기타 출연기금으로 한다.

제9장 각종위원회 등 설치

제49조(원로회의) ① 국기원장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로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원로회의는 의장, 부의장, 위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5.13.>
- ③ 원로회의 위원의 정수 및 자격, 위원 선출, 회의 소집, 세부 운영 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원로회의 위원 선출은 원로회의 3분의 2 찬성으로 선임한다.<신설 2019.5.13.>

제50조(기술심의회) ① 국기원은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기 위

하여 기술심의회를 둔다.

② 기술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상벌위원회) ① 국기원은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신설 2019.5.13.>

② 태권도, 체육 관련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은 상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5.13.>

③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상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9.5.13.>

제52조(기타 위원회) ① 국기원 운영에 필요한 특별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5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법인 해산) 국기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55조(잔여 재산의 귀속) 국기원을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에 귀속한다.

제56조(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부 칙 <제정 2010. 05. 18 정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권리.의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0. 09. 02 정관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02. 01 정관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12. 15 정관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03. 12 정관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0. 09 정관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12. 13 정관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05. 13. 정관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② 이 정관 시행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한다.

【별첨 1】

기 본 재 산 목 록

1. 기본재산 총괄표<개정 2019.5.13.>

재산명	수량	평가액
동산	1통장	1,265,562,438원

【별첨 2】

원장선출위원회 <신설 2019.5.13.>

원장선출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또는 총재가 지명한 임원 1인
2.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인
3.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 1인
4.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추천한 전국 시·도태권도협회 회장 2인
5. 5개 대륙 연맹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5인
6. 사단법인 국기원 태권도 9단 연맹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인
7.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인
8. 각 대륙별로 국기원 발전에 기여도가 큰 국가협회 중 아시아, 유럽, 팬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인
9.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태권도 지도자 국내 35인, 해외 5인 등 40인
10. 8호, 9호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 공헌도 (3년 평균) 등에 따른다.
11. 국기원 직원 대표 1인
12. 국기원 해외파견사범 1인